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7299 판결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7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3. 5 선고 96나4758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996. 10. 18 선고 95가합132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AAA선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AB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BA)

【피고, 상고인】 현신애권사 복음선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B외 2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3. 5. 선고 96나475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진실한 소유자인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바뀐 이 사건 제2차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제2차 변경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2차 변경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2029호 및 1995. 5.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645호로 각 채권최고액은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0원, 채권자는 조성제로 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의 원심 계속중인 1997.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방신청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157호로 1997. 1. 31.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그 소유자를 "신AAA선교회"(원고)로, 주소를 "서울 ○○구 ○○○○동 00-0의 2"로 각 변경(즉 제2차 변경등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내용의 제3차 변경등기를 경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3차 변경등기는 제2차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일방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방법으로 경로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된 부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제3차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제2차

변경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제3차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제2차 변경등기로 인한 법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제2차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피고와의 분쟁의 관념적 해결을 꾀할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좀 달리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2차 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제2차 변경등기만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원고 선교회는 조작된 단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